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9
----------	-----

제출년월일 : 2016. 09.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가. 「법제처의 조례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관련조례 일제정비 권고에 따라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 및 등록 취소 기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 완화(조례안 제4조)

-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등

나. 작은도서관 등록 취소 기준 완화(조례안 제5조, 제6조)

-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등록 취소 기준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시행령, 도서관법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사전규제검토,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2016. 8. 2(개선 의견 반영)

3) 입법예고(2016. 7. 21 ~ 2016. 08. 10) 결과 : 제출 의견 없음

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6. 8. 31(원안 의결)

5) 조례안 의회 제출 : 2016. 9.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설치 기준 및 조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설치 기준 등) ①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중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등록 및 폐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등록 및 폐관) ①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제4조의 설치 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군수에게 등록신청 할 수 있으며, 군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설치 기준을 갖추면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폐관하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작은도서관 변경등록신고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작은도서관 폐관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의 취소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등록의 취소 등) ①군수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31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운영자는 군수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u>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4조(설치 기준 및 조건)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하고, <u>매년 신규 자료를 구입·비치하여야 한다.</u> 2.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p>제5조(등록 및 폐관) ①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4조의 설치 기준 등 조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작은도서관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p>	<p>제4조(설치 기준 등) ①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중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②지방자치단체,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p> <p>③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희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p>제5조(등록 및 폐관) ①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제4조의 설치 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군수에게 등록신청 할 수 있으며, 군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설치기준을 갖추면 등</p>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작은도서관 변경등록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작은도서관 폐관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의 취소 등) 군수는 3년마다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작은도서관의 대표자는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도서관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록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폐관하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작은도서관 변경등록신고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작은도서관 폐관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의 취소 등) ①군수는 5조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운영자는 군수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으므로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연락처	(033) 330 - 2250

관 련 법 령 발 취

□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제3항에 따른 피난 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도서관으로 한정한다)

2. 개별기준

가. 공공도서관

1) 공립 공공도서관

봉사대상 인구 (명)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제곱미터)	열람석 (좌석 수)	기본장서 (권)	연간증서 (권)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비고: 1.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洞)지역에만 해당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지역에만 해당한다)·읍·면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2.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시청각실·회의실·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가.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
 - 나.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갖추되, 해마다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증대할 것
 - 다. 그 밖의 향토자료·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 2) 사립 공공도서관
- 1)의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3) 작은도서관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4) 장애인도서관(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기계·기구	장서	녹음테이프
66제곱미터 이상(이 중 자료열람실 및 서고의 면적이 45퍼센트 이상일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점자제판기 1대 이상 2. 점자인쇄기 1대 이상 3. 점자타자기 1대 이상 4. 녹음기 4대 이상 	1,500권 이상	500점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나. 전문도서관(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 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3천점) 이상이어야 한다.

- 다.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 제3항의 시설 및 자료 기준에 따른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의 도서관
별도의 시설 및 자료 기준 없음

□ 「도서관법」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1조의 2(등록의 취소 등) ① 시·군·구청장은 제31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1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2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대표자는 시·군·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